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하 종 문

- | | |
|---------------------------|-------------------------|
| I. 들어가며 | V. 이주조선인 ‘동원’의 실상 |
| II. 중일전쟁 이전의 이주조선인 | VI. 이주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의 괴리 |
| III. 강제동원의 개시와 이주조선인 대책 | VII. 나오며 |
| IV.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이주조선인 ‘동원’ | |

I. 들어가며

1937년 7월 도화선이 당겨진 전면적인 중국 침략은 식민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내선일체’가 부르짖어졌고,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었다. 인적 동원의 경우, 지원병·징병제와 같은 병력동원과 더불어 1939년부터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매년 수십만의 노동자가 현해탄을 건너야 했다. 이른바 ‘강제동원’의 시작이다. 이미 일본 본토에는 1936년 말 시점에서 약 70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시체제의 본격화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조선인의 이동을 초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시기의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은 자발적인 ‘이주’와 강제동원이라는 두 가지 계기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태도가 등한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후자인 강제동원의 규명에 집중되었으며, 전자의 경우는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통제조직인 ‘협화회(協和會)’와 연결시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데 그친다.¹⁾

1) 단독저서인 1986 《協和會》(社會評論社) ; 2001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總和社) ; 2002 《日本の朝鮮・韓國人》(同成社)과 공저 山田昭次·古庄正, 2005 《朝鮮人戰時勞働動員》(岩波書店)이 그러하다.

본고는 강제동원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복원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충분히 참작하면서도, 전시에든 지속되었던 이른바 ‘연고’ 도항에 의한 이주자(이하 이주조선인)를 강제동원된 조선인(이하 강제동원조선인)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조선 지배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전시동원,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의 이동을 총체적으로 규명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주와 강제동원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준별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은 생활과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확연한 구분과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그런 현실에서 투사되는 전시동원의 본질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고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을 기존 연구에 견줘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조선인은 전시에 어떤 생활을 영위했는가를 주로 노동 내지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협화회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황민화’의 기치 아래 일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일본풍’을 강요당했던 이주조선인의 생활사는 상당 부분 밝혀졌으나, 이주조선인이 주로 종사했던 토목건축이나 광산 등의 ‘저변노동’의 실태 분석은 주된 관심 영역에서 비껴나 있었다. 가령 일본의 거주지와 조선의 고향을 연결하는 이주조선인의 네트워크에 주목한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연구는 일본정부와 식민지당국이 ‘지배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규제·차단에 진력했다는 점을 밝혔지만, 전시기 상황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²⁾

이렇게 추출한 이주조선인의 노동과 생활은 전시노동력동원이라는 시대상황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궁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아마다 쇼지(山田昭次)는 “강제동원된 조선인을 포함하는 전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시국’기업에 배치, 정착시키”는 것이 협화회의 임무로 기대되었으며, 조선인의 황민화와 숙련노동자화를 병행하여 추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 하지만 그의 분석은 강제동원조선인의 사례에 집중된 탓에,⁴⁾ 이주조선인이 어떻게 동원되었는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전시체제 운용에 필요한 노동력을 왜 이주조선인이나 자발적인 도항자가 아니라 조선으로부터의 강제

2) 水野直樹, 1999 <朝鮮人の國外移住と日本帝國> 《移動と移民(岩波講座 世界歴史19)》(岩波書店)

3) 山田昭次,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に對する國家責任と企業責任> [山田昭次・田中宏 편, 1996 《隣國からの告發 - 強制連行の企業責任2 -》(倉史社) 62~64] 이주조선인에 대한 치밀하고 방대한 분석을 한 도노무라 마사루도 전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外村大, 199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形成・構造・変容》(緑陰書房)].

4)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이주조선인이 대상이었던 징용이 조선인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언급되며, 저항 전체의 주역도 강제동원조선인으로 지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동원을 통해 조달했는가의 물음도 방기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주조선인을 포함하여 전시기의 조선인 이동, 즉 동원의 전체상을 그려 내는 작업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가 이주와 강제동원의 상호관련성에 착안하여 “조선인 강제동원 정책은 조선인의 ‘내지’ 도향을 강제동원이라는 권력적인 모집 형태로 일원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⁵⁾ 하지만 그는 ‘일원화’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일본인을 포함하는 노동력 동원 정책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실상과 한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II. 중일전쟁 이전의 이주조선인

1910년의 한국병합은 곧 조선인 이주자의 증가를 의미했다. 병합 직후 내무성이 경보 국장 명의로 각 지방에 ‘조선인 호구 직업별 인원표의 건’이라는 통첩을 발했고, 이어 1911년에는 ‘조선인 명부 조정의 건’을 지시한 것도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⁶⁾ 이를 통해 경찰서에서 작성한 명부는 1부를 상급기관에 제출하며, 조선인의 언동과 사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이동시에는 행선지를 숙보하도록 정해졌다.

이주조선인의 증가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에 미증유의 발전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 수요가 창출되었고, 바로 이 노동력 수요를 매우기 위해 조선인의 도향이 이루어졌다. 1919년의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의 탄압을 위해 도향이 제한되었고, 때마침 일본 경제도 불황에 시달리게 된다. 이후 일본은 본국의 경기 순환에 따라 조선인의 도향을 억제하거나 허용하면서 조선인 노동력을 일본자본주의 하에서의 차별적인 취업구조 속에 편입시켜 나갔다. 1920년에 3만 명을 넘은 재일조선인 인구는 1930년에 약 3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어떤 경로이든 일본에 삶의 터전을 잡게 된 조선인에 대한 처우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⁷⁾ 무엇보다 1931년 이후 중국 침략의 개시는 치안의 측면에서도 이주조선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자각하게 했다. 1934년 10월 ‘조선인 内地 이주

5) 西成田豊, 1997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東京大學出版會) 242

6) 2002 《日本の朝鮮・韓國人》 102~103

7) 이런 측면은 앞의 <朝鮮人の國外移住と日本帝國>이 좋은 참조가 된다.

대책의 건'이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⁸⁾ 조선인의 일본 도항 억제와 만주 이주의 확대가 골간이었으며, 제4항에는 이주조선인 대책이 열거되어 있다. '조선인 보호 단체'의 통일·강화, '조선인 밀집 지대'의 보안·위생 등의 생활 개선 도모, 조선인의 지도·교화를 통한 '내지' 동화의 강화 등이다.

한편 중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인 노동자는 “실업 문제의 제공자”인 동시에 “일반 노동시장의 교란자”로 파악되고 있었다.⁹⁾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경우 1932년 여름 실업노동자로 등록된 수 약 1만 명 중 90%가 조선인 ‘자유노동자’(일용노동자)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¹⁰⁾ 이른바 ‘쇼와(昭和) 공황’을 계기로 한 대량 실업의 파고는 결코 조선인 노동자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이런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전술한 1934년의 각의에서는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억제하고 일본 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후자는 협화회의 결성과 운용으로 이어졌다.

중앙 정부보다 지방에서 먼저 움직였다. 1934년 4월 발족된 ‘오사카(大阪)부 내선융화사업조사회’가 그러하며, 때마침 정부 방침의 전환과 예산 책정에 힘입어 조선인 거주지에 ‘矯風會’를 설치하고 ‘협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1936년에는 각 지방의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도쿄(東京), 오사카, 가나가와(神奈川), 아이치, 효고(兵庫), 야마구치(山口), 후쿠오카(福岡) 등지에 잇달아 협화회가 설립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협화사업은 더욱 강화되어 1939년에는 중앙협화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던 부현에는 지역협화회와 더불어 지부가 다수 두어졌다.

이주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을 다루는 본고의 관점에서 초기의 협화회와 협화사업 중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은 ‘寄留届’에 관한 방침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의 경우에는 호적의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류계를 제출해야 했다.¹¹⁾ 따라서 기류계를 통한 소재 파악은 동원정책의 입안과 운용을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36년 8월 31일 내무성은 각 지방장관에게 ‘협화사업 실시요지’라는 통첩을 내리는데, 협화회의 활동 세목 중 기류계는 ‘기타 제반 수속’과 더불어 ‘장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¹²⁾ 이주조선인의 최대 집주지인 오사카에서도 기류계는 협화회의 중

8) 1934.9.30 <朝鮮人移住對策ノ件> [朴慶植 편, 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3 (三一書房) 이하 《박경식》으로 약칭.

9) 東京府社會課, 1936 <在京朝鮮人勞働者の現状> 《위 책》 3

10) 《協和會》 27

11) 1914년 3월에 제정된 기류법은 “90일 이상 본적 외의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주를 갖는 자는 이를 기류자라 한다. 본적 없는 자, 본적 불분명한 자 및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자로서 90일 이상 일정 장소에 거주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점 사업이 아니었다. 이마미야(今宮)교풍회에서는 1935년 5월에 “기류계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용지를 인쇄하고 무료로 대서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였고,¹³⁾ 1936년도 교풍회의 전체 사업방침 중에서 ‘교육장려’와 관련하여 기류계가 거론되며,¹⁴⁾ 1937년도의 ‘교풍사업’ 항목 중에서 기류계의 장려는 정확한 호적 신고와 더불어 절대적인 ‘교정’ 사항이 아니라 ‘장려’ 사항 속에 포함되는데 그치고 있다.¹⁵⁾

반면에 경찰, 특히 특고의 경우는 이주조선인 문제를 치안유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별도로 주거지와 신분 변동을 파악해 나갔다.¹⁶⁾ 조선인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본적·출생지·주소·성명·별명·생년월일·성별·직업·性行·인상·특징·도향 연월일·가족관계·교우관계·단체관계 등을 기입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동할 때마다 정리하여 타 경찰서에 통보하여 “항상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리고 ‘容疑인물’을 잡기 위해 조선인 밀집 지대와 직장, ‘함마(飯場, 노동자합숙소)’ 등은 언제나 엄밀하게 시찰하도록 했다.

요컨대 이주조선인의 대책 중에서 주거지와 신분의 파악은 치안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당국의 고유한 업무였을 따름이며, 결코 협화회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병합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본토로 건너간 조선인의 처우와 관리는 경찰, 즉 特高課 內鮮係가 일원적으로 통제했고, 지방행정기관이 조선인과 결부되는 경우는 기류계와 자녀 입학 등에 한정되었다.¹⁷⁾ 각 市町村 사무소에서 寄留簿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43년에 들어와 이주조선인의 징병을 실시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동안 이주조선인의 직업, 인구, 거주지 확인 등의 사무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¹⁸⁾

12) 武田行雄, 1938 《内地在住半島人問題と協和事業》(國策研究會), 《協和會》 65에서 재인용.

13) 樋口雄一 편, 1991 《協和會關係資料集Ⅳ》(綠陰書房) 60

14) 1936.1 <特高月報> 《박경식》 3, 637~638

15) 《協和會關係資料集Ⅳ》 102

16) <特別高等警察執務心得> 《박경식》 3, 26~28

17) 《朝鮮人戰時勞働動員》 218

18) 《日本の朝鮮・韓國人》 103. 1940년부터 실시된 창씨개명의 경우에도 개명 신고는 시정촌의 호적계가 접수·처리하지 않고 경찰서가 창구 역할을 했다.

Ⅲ. 강제동원의 개시와 이주조선인 대책

1. 중일전쟁 직후의 상황

1934년의 각의 결정으로 이주조선인에 대한 처우와 대응이 준비·실행되고 있기도 했으나, 중일전쟁의 발발이 직접적으로 이주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쟁 발발로 인해 아이치현 세토(瀬戸)에서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던 조선인의 경우 조업 단축으로 상당수의 실직자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현 당국의 대응은 사업주의 배려를 요청하는 동시에 협화회 세토 지부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出稼를 권장하는 정도였다.¹⁹⁾ 중일전쟁 발발 직후 내무성이 발한 통첩에서 다수의 조선인들이 종사하는 공장이나 군수품 공장의 조선인에 대한 시찰과 취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²⁰⁾ 지역에서도 치안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조선인의 취업 상황에 대한 영향을 협화회, 즉 경찰 조직을 가동하여 점검해 나갔다.

다른 하나는 전신노동력동원을 담당하던 내무성 사회국의 발상이다. 1937년 8월 ‘지쿠호(筑豊)석탄광업회’는 ‘석탄광업연합회’ 등에 도항 제한의 완화와 조선인 이입을 요망했고, 9월에 석탄광업연합회는 상공대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동원을 요청했으며, 이런 움직임은 조선인 동원이 성사될 때까지 이어졌다.²¹⁾ 이와 연계된 대책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사회국은 12월 말의 통첩에서 “내지재주조선인 노동자로서 취업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자(실업등록자를 포함)가 있는 지방에서는 이번 기회에 극력 석탄산에 소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²²⁾

조선총독부의 움직임도 일본 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중일전쟁의 발발이 조선인 지원병 제도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내선일체의 분위기를 다지는 기회라는 판단 하에, 1938년 3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이 직접 나서서 전술한 1934년의 각의결정

19) 1938.1 <特高月報> 《박경식》 4, 253 하지만 이직자들은 대부분 5-15년 정도 거주하여 정착한 터여서 타 지방으로의 출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20) 1937.7.17 <治安維持ニ關スル件> 《위 책》 3, 12~14

21) 1937 <筑豊石炭鉱業會庶務事蹟> ; 1991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Ⅱ 朝鮮人1上卷》(明石書店) 393~396

22) 朴慶植,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未來社) 49

을 개정하여 도항 제한의 해제를 요청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²³⁾ 일본 내의 이주조선인 처우와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관의 차별적 대우 근절, 일시 귀국의 완화, 이른바 ‘불량 조선인’ 송환의 보류 등의 항목에 무게가 두어져 있지만, 본고에서는 ‘노동자 모집’의 항목에서 “내지의 고용주로서 조선 내에서 노동자를 모집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내지 재류 실업 조선인 중에서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조선 내에서 신규 노동자를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인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 것이 흥미롭다. 이 때문에 요청은 내무성과 후생성 두 곳을 향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은 7월에 내려졌다. 먼저 동 8일 후생성(사회국장, 직업부장)과 내무성(경보국장)은 중일전쟁에 즈음한 조선인 노동자 대책을 별도로 정리했는데, 아래와 같이 문면에서도 조선총독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금번 물자의 사용 제한 내지 금지에 의해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이직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조선인의 고용에 관해서는 내지 재주 조선인 보호의 견지에서 기업가 기타 고용자를 諭示하여 조선 내에서의 신규 고용을 보류하고 오로지 내지의 이직 조선인 노동자로 충당하고자 하는 바, 이런 취지를 양지하고 협화사업 단체, 직업소개소 기타 관계기관 과도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협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²⁴⁾

역시 동 13일 도항 통제에 관한 내무성의 통첩이 발해졌고, 거기에서는 도항 통제의 완화가 개진되어 있다. 동시에 노동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위 8일자 통첩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의 의향에 따르겠다고 되어 있다. 당시 ‘내선협정’이라 불렸던 7월 13일자 통첩 내용은 동 21일 척무성에 전달되었고,²⁵⁾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8월 18일 그 내용을 각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관련 담당자의 협의회를 거쳐 더 자세한 지침을 담은 통첩을 12월 16일 각 지방에 내렸다.²⁶⁾

23) 1938.7.13 <朝鮮人ノ内地渡航ニ關スル件通牒> 《박경식》 3, 16~19 1938년 3월 23일 조선총독부는 척무성에 중개를 요청했고, 7월 1일 내무성에 전달되어 동 13일 결정이 내려졌다.

24) 1938.7.8 <朝鮮人勞働者雇傭ニ關スル件> 《協和會關係資料集Ⅴ》 15~17

원래 <内地在住朝鮮同胞ノ第二次一齊調査實施ニ關スル件ヲ定ム>(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부속 문서이며, 《協和會關係資料集 Ⅴ》에 수록되어 있어 출처를 통일한다.

25) <内地在住朝鮮人運動> 《박경식》 4, 67

26) <朝鮮人勞働者内地渡航取締ニ關スル件> 《위 책》 3, 19~23

7월 8일자 통첩과 연동하여 “내지의 물자 통제에 의한 현재 실정을 고려하여 도항 열기의 억제에 힘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한편 9월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조선 측에서 총독부·경남·전남·경북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는 물론 내무성이나 후생성과 같은 중앙부처에서도 이주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에 관한 필요성이나 정책적인 준비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에서 노동자를 동원하는 일보다는 이주조선인 실업의 해소와 고용 촉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2. 강제동원과 이주조선인

1939년 7월 노동동원계획이 책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조선에서 노동자들이 도일하게 된다. 이른바 ‘모집’의 시작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협화회의 위상과 관련 방책은 면모를 일신했고 이주조선인에 대한 관리체계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10월 10일 후생성 사회국장과 내무성 경보국장은 ‘협화사업의 확충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발했다.²⁷⁾ 이 통첩에 따라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물론이고 이주조선인들까지 빠짐 없이 도부현 단위로 조직된 협화회에 소속해야 했고, 회원임을 증명하는 ‘會員章(이하 회원증)’을 지녀야 했다. 강제동원조선인은 별도로 회원증에 ‘募’라는 표식을 붙여 이주조선인과 구별하며, 1939년 12월 말일까지 거주지 회원을 조사하여 명부에 등재하도록 했다.

이와 연동하여 경찰 당국의 움직임도 대폭 강화되는데, 이는 1939년 12월 1일부터 특고의 집무 지침이 대폭 개정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²⁸⁾ 거기에서는 1921년부터 발령된 조선인 시찰·단속과 異動월보, 도항, 각종 명부 작성에 관한 규칙이 통합되어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새로 관내에 전입한 조선인은 명부를 2부 작성하여, 정본은 경찰서에 부분은 각 지구 관서에 비치한다.
- * 조선인이 현 내의 다른 경찰서 관내로 전출한 경우는 정본을 이송하고 부분에도 기록을 남기며, 전입한 경우에도 정본의 여부를 점검하고, 정본이 없는 경우는 새로 작성한다.

1940년에 들어와 중앙협화회는 45만부의 회원증을 발행했다.²⁹⁾ 이 회원증은 부현 협

및 주요 경찰서, 일본 본토에서는 척무성·내무성·후생성·경시청과 더불어 오사카·야마구치·후쿠오카 및 주요 경찰서 등의 관계자가 모여 ‘내선협정’을 놓고 ‘내선협의회’를 개최했다<朝鮮人勞働者内地渡航取締の狀況> 《위 책》 24)

27) 1939.10.10 <協和事業ノ擴充ニ關スル件> 《協和會關係資料集Ⅴ》 39~70

28) 1939.11.30 <内訓特高秘發-第480号 特別高等警察執務心得->(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문서는 나가노(長野) 현지사가 각 경찰서에 지시한 것이나, 같은 지시가 전국에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화회와 지부를 통해 각지에 배포되었고, 사진이 첨부된 회원증에는 본적·현주소가 기재되었다. 정회원(세대주)과 준회원(세대주에 준해 일하는 자)으로 나뉘며, 부인이나 어린이, 세대주가 아닌 무직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면에서 회원증은 취업, 열차 승차, 귀국, 배급 등의 계기를 통해 노동에 종사하는 조선인의 이동과 취업 상황을 파악·통제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결정적인 수단이었다.

위와 같이 '모집'의 시행과 더불어 협화회와 경찰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주조선인의 '동원'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소개한 통첩 '협화사업의 확충에 관한 건'에서는 "조선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부문에 정착시켜 국책에 협력하게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지만, 이주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는 의도는 희박했다고 보인다. 오히려 '모집'에 의해 도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내에 정착시키는 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1940년 8월 1일, 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장·사업장의 사정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일본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동일 공장장과 사업장에 고용기간의 연장과 재고용을 촉진하거나, 다른 노무동원계획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³⁰⁾

그러나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도향 제한의 완화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았다. 개별적으로 연고에 의지하여 일본 내의 '평화산업' 즉 비군수산업에 취업하는 도향자(이하 연고도향자), 즉 신규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그것이다. 1939년 9월 이후 1940년 11월 말까지 '모집'에 의한 도향자가 78,000여명 정도인 데 비해, 연고도향자는 1939년 9월부터 1940년 10월 말까지 기간 동안 113,000여명을 기록했다.³¹⁾ 이런 상황은 통제경제의 강화에 따라 중소상공업자를 비롯한 평화산업을 축소시키려는 계획과 모순을 빚게 되며, "기주 조선인 노동자 및 내지인 노동자를 곤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내지의 시국산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산업 방면에 취직하려는

29) 《協和會》 146

30) 1940.8.1 <雇傭期間滿了セル募集ニ依ル移住朝鮮人勞働者ニ對スル措置ニ關スル件> 《協和會關係資料集V》 84~93

강제동원조선인으로 하여금 직업의 변동을 통해 일본 본토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데 직업소개소가 창구이자 통제기관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31) 1941.1.14 <朝鮮人勞働者ノ内地渡航取締ニ關スル件> 《박경식》 4, 12~13 "소위 연고에 의해 내지에 도향하여 평화산업, 자유노동 등에 취로하는 자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인식은 내무성 경보국의 통첩에서도 반복되며(1941.2.27 <朝鮮人勞務者移住促進ニ關スル緊急措置ニ關スル件>(朴慶植 편, 《앞 책》 14~15), 그 중에는 만주 지역을 거쳐 도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941.1.9 <在滿朝鮮人ノ内地渡航取締ニ關スル件> (한국 국회도서관 소장)].

자를 다수 도향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선화하게 된다.

《고등외사월보》는 보다 자세한 정황을 보여주는데, 아래의 <표1>이 그러하다. 약 60%의 연고도향자들이 평화산업에 취업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들은 주로 교토·오사카·고베(神戸)를 포함하는 관서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³²⁾

<표 1> 연고도향자와 모집에 의한 도향자의 취업 상황

		연고도향		모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탄광, 광산		2,894	7.9	47,064	75.8
토목건축		6,345	17.2	14,434	23.2
공 장	시국산업	6,261	(17.0)		
	평화산업	21,340	(57.9)		
	소 계	27,601	74.9	600	1.0
합 계		36,840	100	62,098	100

* 《高等外事月報》14호(1940년 9월분)에서 작성했다.

* 인원은 1939년 9월부터 1940년 8월까지의 누적인원을 가리킨다.

이주조선인의 동원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대응과 이에 따른 이주조선인의 취업 실태는 교토 시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1940년 “관하 재주조선인 … 그 다수는 시내에 재주하고, 토목, 섬유공업, 유젠(友禪, 교토의 전통 염색, 인용자) 세척직공, 고물상 기타 잡업 등에 종사한다. 그래서 군수공업 관계부문은 여전히 문호폐쇄의 상태에 있어 여기에 직접 취로하는 자는 지극히 소수이며 그 외는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³³⁾ 토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다름 아닌 평화산업이다.

IV.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이주조선인 ‘동원’

1. 이주조선인 ‘동원’의 시작

중앙 부처와는 달리 지역의 협화회 쪽에서는 이주조선인의 ‘동원’을 적극적으로 모색

32) 北海道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集委員會 외편, 1999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北海道保健福祉部保護課) 55

33) 京都府, 1940 《府知事引継文書》; 1980.6 《在日朝鮮人史研究》 6

하기도 했다. 가령 오사카부 '내선융화사업조사회'의 경우 1941년 3월 13일 총회를 열고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³⁴⁾ 일본 내에서 오사카 지역으로 전입하는 숫자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조선인에게 노동수첩을 소지하게 하고 이동방지령을 적용하여 노무수급의 원활·적정을 도모할 것과, 국민징용령을 이주조선인에게도 실제로 적용하여 시국산업에 취업시켰으면 한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노동력동원정책을 전담하는 후생성은 여전히 이주조선인의 '동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다만 1941년 4월에 들어가면서 신규 연고도향자 5,000명을 해당 년도의 노무동원계획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입안하여 실행하고자 했으나,³⁵⁾ 이 경우도 모집의 틀을 약간 변형시켜 모집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했다. 대상이 되는 연고도향자는 "이미 모집에 의해 이주한 기주노동자로부터 조선 내에 있는 연고자 중에서 내지에도 향하여 본인과 동일 직장에서 가동을 희망하는 자"로 정해졌으며, 인원도 홋카이도 900명, 후쿠오카 850명인 것으로 보아 주로 탄광에 취업시킬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주조선인의 본격적인 동원은 이른바 '모집'에서 '관 알선'으로의 이행과 맞물려 구체화되었다. 1942년 2월 13일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이하, '방책')이 각의결정에 의해 실시된 것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었다.³⁶⁾ 기존의 연구에서 '방책'은 강제동원 방식이 '모집'에서 '관 알선'으로 전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거론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조선인 동원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방책'에 의해 "조선인 노무자는 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필요한 훈련을 가해 송출하"며, "조선인 노무자는 충분한 국가의 지도보호 하에 사용하게 하여 우수한 황국 노무자로서 육성하여 일정기간(대개 2년)에 보충·교대시킴으로써 조선에서의 인적 국방자원의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조선인 청년(17-25세)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작업은 '인적 국방자원의 강화' 즉 징병제와의 연계도 고려해서 계획되었던 것이다.³⁷⁾

34) 中央協和會, 1941.3 《協和事業》[朴慶植 편, 1982 《朝鮮問題資料叢書 4》(アジア問題研究所) 384~385]

35) 1941.4.11 <昭和十六年度勞務動員實施計畫ニ至ル迄ノ朝鮮人勞務者ノ移住ニ關スル暫定措置ニ關スル件> ; 1941.4.17 <勞務動員實施計畫ニ伴フ朝鮮人勞働者ノ所謂緣故渡航者ノ取り扱ヒニ關スル件> ; 1941.4.19 <勞務動員實施計畫ニ伴フ所謂緣故ニ依ル朝鮮人勞働者ノ移住取扱ニ關スル件> ; 1941.5.15 <勞務動員實施計畫ニ伴フ朝鮮人勞働者ノ所謂緣故渡航者ノ取扱ニ關スル件> 등의 일련의 통첩을 통해 실시된 내용이다 (《박경식》 4, 16~20).

36) 1942.2.13 <朝鮮人勞務者活用ニ關スル方策> 《위 책》 24~25

37) 실시요령에서도 "조선에서의 청년훈련 및 지원병제도 등과의 관련에 특히 유의하여 서로 추진 조

징병제 도입이 정식으로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1942년 5월 8일이었으나, 징병제 준비에 관여했던 군인의 논문에 의하면 1942년 초에 조선인 징병에 대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의 결재를 받아 준비에 들어갔다.³⁸⁾ 이와 연동하는 움직임으로서 1942년 1월 육군성 병무국장(田中隆吉 소장)으로부터 조선 장정의 체위, 국어 보급 상황, 호적정비 상황 등에 관해 조회가 있었으며, 조선군은 총독부와 협력하여 3월 1일부터 10일 동안 전 조선에 걸쳐 만 18-19세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인에 대한 징병검사 실시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중앙에 상신했다.³⁹⁾ 위 ‘방책’은 바로 이 징병제 실시와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수립되었고, 조선인의 도항을 금지함으로써 노무동원계획의 집행이나 징병제의 취지와 어긋나는 1934년 10월 각의결정 ‘조선인 내지 이주 대책의 건’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주조선인의 노동력동원에 관한 원칙도 처음으로 분명히 밝혀졌다. 즉 ‘방책’의 실시에 수반하여 이주조선인은 징용 또는 국민근로보국대에 참가시킴으로써 노동력동원의 강화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의 방침 전환에 따라 중앙협화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⁴⁰⁾ 이주조선인으로서 전직을 요하는 자를 ‘시국 하 긴요 산업부문’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1942년 6월 5, 6일 이들 동안 도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도쿄, 가나가와 등 7개 부현의 협화사업 관계직원을 후생성 대회의실에 회동시켜 ‘조선인 전직 훈련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부국민훈련소를 시찰했다. 또 1943년 9월 고등전문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는 조선인 학생을 각종 공장, 육해군 직영공장, 현병보 등에 취직시키기 위해 1942년 7월 18일에 ‘조선인학생문제 간담회’를 개최했다.⁴¹⁾

1943년도 국민동원계획은 이런 기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기본방침에는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이입은 대략 전년도와 같이 하며, 내지재주조선인, 화인(중국인, 인

장을 기하기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38) 田中義男, 1968 <朝鮮における徴兵制> 《軍事史學》 8-4 ;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29~30에서 재인용.

39) <朝鮮人志願兵・徴兵の概要 第四章 徴兵制への飛躍> 《朝鮮軍關係資料》(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22~23에서 재인용.

40) 中央協和會, 1943.3 《昭和十七年度事業現況》 《박경식》 5, 687

41) 조선인 학생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1942년 4월 “강제적으로 징용해서 군무 기타 국가 주요한 시무에 복무하”게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여기서 군무란 지원병 제도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육해군 직영공장이나 현병보 등이 군과의 협조 하에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内地朝鮮學生に關する方針に就て> 《協和會關係資料集Ⅰ》 259).

용자)노무자, 포로 및 형무소 재감자 등에 대해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동원실시계획에 탄력성을 갖게 한다”⁴²⁾고 되어 있다. ‘상시요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내지재주조선인은 ‘급원’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내지재주조선인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 재주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산업에의 공출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급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이주조선인은 국민징용 제외를 해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규모의 측면에서도 조선으로부터의 노동력동원 120,000명에 더하여 이주조선인 50,000명의 동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43년 4월 지방장관회의에서는 “일반 내지재주조선인에 대해서도 중요산업 방면으로의 전직 또는 근로봉사 등을 종용하여 조선인 노무자의 근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시하 생산 증강에 기여하게 하도록 특단의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지시가 내려졌다.⁴³⁾

니시나리타는 위와 같은 노동력동원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의 직업 구성에서 공업, 특히 군사공업의 비중이 1943년 이후 증가 경향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술한 교토 시의 경우 1944년에는 “이들 재주자(이주조선인, 인용자)는 교토 시내 및 마이즈루(舞鶴), 미야즈(宮津) 방면 등의 도시에 蟬集하여 종래는 도공, 섬유공업, 유젠 염색, 수선직공, 잡업 등의 평화산업 부문에 가동하는 자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시국의 영향을 받아 점차 시국산업 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⁴⁾

2. 이주조선인의 파악·통제의 강화

전술한 ‘방책’은 ‘관알선’으로의 이행과 더불어 연고도항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조선인들까지도 일원적인 통제 하에 두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조치가 1942년 3월 기획원 제3부(노동력동원 담당) 이름으로 내려진 관계부처 간의 ‘각서’이다.⁴⁵⁾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물론 신규 도항 노동자도 노무조정령과 기타 통제법령을 적용하여 인가를

42)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石川準吉, 1975 《國家總動員史(資料編第二)》(國家總動員史刊行委員會) 236~327을 참조했다.

43) 《厚生次官在勤記録》 二, 本省一般關係 ;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 209~210에서 재인용.

44) 京都府, 1944 《府知事引継文書》 ; 《在日朝鮮人史研究》 6, 1980년 6월.

45) 1942.3.31 <朝鮮人ノ内地渡航取扱ニ關スル件> 《박경식》 4, 26~27

받도록 한다.

- * 담당관청은 국민직업지도소장과 경찰서장이 되며, 인가는 양자의 협의를 거쳐 국민직업지도소장의 이름으로 내린다. 국민직업지도소장 이외의 관청에서 인가하도록 한 통제법령의 운용도 이에 준한다.

이리하여 일본 본토에서 운용되던 노동력 통제의 틀, 즉 노무조정령과 국민직업지도소의 통제체계 속에 재일조선인 노동자 전체를 편입시킨다는 원칙이 정립된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은 협화회의 조직망과 회원증 소지의 철저화를 통해 도모되었다. 1942년 7월, 빈발하는 도주를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경보국장이 경시총감과 지방장관에게 내린 통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⁴⁶⁾ 그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조선인 노동자는 전원 협화회에 가입시킨다는 방침을 철저히 시행한다.
- * 회원증의 교부와 이동사항의 정정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부정도항자이거나 도주자이므로 절대로 고용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주지시킨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조선인을 송환하는 외에 적당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
- * 협화회 가입과 회원증 소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2개월 간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일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 총수 665,277명(1941년 말)에 육박하는 643,416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회원증 미소지자는 68,468명이었고, 도주자 6,096명과 부정도항자 8,026명, 기타 45,681명의 대부분은 직장에 취업시켜 회원증을 교부받도록 했다.⁴⁷⁾

첫 일제조사는 전술한 이주조선인의 징용을 위한 예비조치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며, 이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첫 징용도 이렇게 구축된 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942년 9월 21일 해군에서 요구한 징용령의 발동은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다.⁴⁸⁾ 징용 대상자의 조사등록은 ‘불급산업 방면’ 종사자로 하며, 담당부서 및 부현 협화회(지회)와 연락하여 지구별 할당을 고르게 하고, 회원 명부를 이용하여 적격자의 등록에 힘쓰

46) 1942.7.22 <朝鮮人ノ移動防止ニ關スル件> 《위 책》 4, 28~30. 유사한 내용의 통첩이 육군성과 해군성에 전달되어, 산하의 공장·사업장에 주지시키도록 했다(1942.8.5 <朝鮮人勞務者ニ關スル件> 《위 책》 4, 30). 이튿날에는 후생차관·내무차관·상공차관의 연명 통첩으로 산하 공장·사업장 및 지방, 광산감독부 등에 전해졌으며(1942.8.6 <移入朝鮮人勞務者逃走防止ニ關スル件> 《위 책》 4, 31), 거기에서는 업자 간의 ‘노동자 빼가기’를 막기 위해 노무조정령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47) 內務省警保局, 1942 <社會運動の狀況> 《위 책》 934~937

48) 1942.9.22 <海軍第四百六十六次新規要員徵用實施ニ關スル件> ; 1942.9.23 <内地在住朝鮮人徵用ニ伴フ協和會ノ指導ニ關スル件> ; 1942.9.23 <内地在住朝鮮人徵用ニ伴フ協和會ノ指導ニ關スル件> 《위 책》 32~33

다. 출두 요구서는 반드시 지방장관의 이름으로 발부하며, 징용령서는 전형 후 즉시 본인에게 교부한다. 국민직업지도소장은 경찰서장(협화회 지회장)에게 협화회원 명부의 열람과 사상 경향에 대한 질의 등을 연락한다. 경찰 혹은 협화회가 인선과 추천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체적으로도 경찰관의 관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협화회 회원증을 통한 통제도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41년 3월 국민노무수첩법이 제정되자 이주조선인은 협화회 회원증과 노무수첩 등 두 개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했다. 게다가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만료 후에는 재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제는 만료되는 시점이 일정치 않아 정리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⁴⁹⁾

1943년 7월, 협화회 회원증을 국민노무수첩 내지 직업능력신고수첩과 연계시키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⁵⁰⁾ 원래 국민노무수첩이나 직업능력신고수첩은 회원증을 제시한 조선인 노동자에게 국민직업지도소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원증에 두 수첩의 교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노무수첩과 직업능력신고수첩의 이중 교부를 방지하는 동시에 회원증과 연계시킴으로써 “이동 방지 기타 노무 통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국(후생성, 인용자)으로부터의 요구도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광공업과 토목건축에 종사하는 조선인은 다른 직업 종사자와는 달리 협화회와 국민직업지도소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주조선인에 대한 직업지도소장의 통제력은 증대되었고, 이는 국민근로보국대 운용의 원활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된다.

V. 이주조선인 ‘동원’의 실상

1. 근로보국대

전술한 ‘방책’에서 지적했던 근로보국대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먼저 도쿄의 경우

49) 勞務行政研究所, 1942.8 《朝鮮人勞務管理の要領》; 《朝鮮問題資料叢書 1》 20

그로 인해 노무행정연구소는 회원증의 만료 시점을 통일하여 일제히 재교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0) 1943.7.5 <協和會々員章二關スル件>; 1943.7.7 <朝鮮人ニ對スル國民勞務手帳若ハ職業能力申告手帳ノ交付二關スル件>; 《協和會關係資料集 I》 379~389 전자는 후생성 생활국장과 내무성 정보국장의 연명 통첩이며, 후자는 후생성 근로국장의 통첩이다.

군인원호회, 협화회, 농회의 주최로 應召 농가에 대한 근로봉사를 1941년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참가 인원은 예정을 능가하여 8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⁵¹⁾ 이런 종류의 근로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41년 1월의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제정은 이주조선인 노동력동원의 개시와도 직결되는 사건이었다. 1942년 1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군마현의 다카사키(高崎) 근로보국대에 참가한 다카사키 협화회원 10명은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탄광까지 가서 일을 했으며, 나가사키의 시마바라(島原) 지회에서 협화근로보국대를 조직하여 기타마쓰우라(北松浦)군에 있는 닛산(日産)의 야타케(矢岳)탄광에서 40일 간 근로봉사를 하고 2월 23일 돌아왔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⁵²⁾

그러면 근로보국대를 통한 이주조선인 동원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1937년 말 현재 조선인 거주지 상위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근로봉사(1개월 이하)와 근로보국대(1개월 이상)의 운용 현황을 인원수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근로봉사와 근로보국대의 운용 현황

	근로봉사			근로보국대		
	1941년도	1942년도	1943년도	1941년도	1942년도	1943년도
오사카			22		141	1,896
효고	60	80	90			35
아이치	566	1,220	425		142	414
도쿄	721	4,729	7,615			
교토						30
후쿠오카					1,776	
야마구치		232	1,500		614	
히로시마						
가나가와						
홋카이도			22		20	52
합계	19,465	66,274	20,367 79,889	407 15,936	4,104 209,227	5,089 279,767

* 1943년 10월까지의 수치이다.

* 굵은 활자는 연인원으로 집계된 수치로서 참고로 인용했고, 순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앞의 자료, 《協和會關係資料集 I》, 357~360

51) 朝鮮銀行京城總裁席調査課, 1942 <内地, 支那各地在住の半島人の活動狀況に關する調査> 《박경식》 4, 1298

52) 1942.6 《協和事業》; 《朝鮮問題資料叢書4》 496~498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계속 실려 있으며, 탄광 쪽은 통상 장기적(1개월 이상)인 근로보국대가 대부분이었다. 오카야마현의 경우, “우노(宇野) 지회원 20명은 9월 1일 반도 동포로서 최초의 국민근로보국명서에 접하고 이후 1개월간 다마노(玉野)시 모 중요공장에 영광스런 근무를 계속 했”다고 한다(《協和事業》1942년 12월호, 같은 자료, 511).

근로봉사의 동원인원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지역을 각각 집계하면 1941년도는 시가-오카야마-오이타-에히메-아이치의 순이며, 1942년도는 도쿄-나라-시가-에히메-아이치, 1943년도는 나라-오카야마-시가-아마구치-구마모토가 각각 해당된다. 근로보국대의 경우는, 1941년가 나가사키-나라-에히메-구마모토-가고시마의 순이며(하지만 전체 인원이 407명으로 미미하다), 1942년도는 후쿠오카-구마모토-아마구치-오이타-아이치, 1943년도는 오사카-이바라키-아이치-오카야마-오이타의 순으로 집계된다.

통계의 엄밀성 여부는 분명히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⁵³⁾ 그 점이 아래 두 가지 사실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저해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하나는 근로봉사와 근로보국대 공히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치를 제외하면 강제동원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인이 집중하던 지역에서의 동원이 역시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내무성 정보국의 근로봉사 통계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1943년도의 경우 '銃後활동'의 일환으로 집계되는데, 조선인 최대의 집주지인 오사카와 효고의 경우는 근로봉사의 사례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자세한 통계가 기록된 9월에는 17개 도부현에서 67개 단체에 3,878명의 조선인이 근로봉사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 5개를 열거하면 아이치-시마네-구마모토-나가노-가나가와의 순이다.⁵⁴⁾ 동 10월~12월까지의 집계를 보면, 15개 도부현에서 558개 단체에 10,550명이 동원되었는데, 상위 5지역은 아이치-오카야마-와카야마-교토-야마나시의 순이며, 625개 단체에 14,428명이 근로봉사를 했다고 되어 있다.⁵⁵⁾

이제 근로봉사의 운영 면으로 들어가 보자. 1942년 가을 효고현 협화회에서는 '식량증산 근로봉사 실시요강'을 결정하여, 현과 군의 농회와 협력하여 각 지회 별로 근로봉사대를 조직했다.⁵⁶⁾ 당초 연인원 7,450명의 동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동원수는 5,651명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위 실시요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태가 드러난

53) 국민근로보국대의 경우, 1942년 12월 말 중앙협화회 조사에 의하면 55회 출동에 연일수 2,494일, 연인원 25,852명이었고(中央協和會, 1943.3 《昭和十七年度事業現況》 《박경식》 5, 686), 1943년 9월 말까지 국민근로보국대의 연인원은 460,021명으로, 근로봉사대의 연인원은 140,940명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中央協和會, 1944.3 《昭和十八年度事業現況》 《위 책》 691~692). 또한 정보국 통계에서 194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인원 14,428명이 근로봉사에 참가했다(<朝鮮人運動の狀況> 1943년 12월, 같은 자료, 275~278)는 것을 고려하면, <표2>로 대략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4) 1943.9 <朝鮮人運動の狀況> 《박경식》 206~208

55) 1943.12 <朝鮮人運動の狀況> 《위 책》 275~278

56) 《協和會關係資料集Ⅳ》 518~523 이하 마찬가지.

다.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전제로 한 지역 선정, 비용의 자기 부담이라는 한계 등을 참작하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희망자’ 위주보다는 참가를 ‘중용’한다는 강제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정황을 종합하면 이 근로봉사는 효고현 협화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간신히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었으며, 상시적인 동원방식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캠페인의 성격이 농후했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1943년 7월 전술했듯이 협화회 회원증을 국민노무수첩 및 직업능력신고수첩과 연계시켰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1944년 3월 후생성 건민국은 예비훈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래의 내용이다.

기구조선인의 노동력활용에 관해서는 근로보국대 내지 근로봉사대의 공출 등에 의해 각각 배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들의 공출에 즈음하여 예비훈련을 지방협화회에서 실시하게 해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기로 했으므로 그 운영에 한층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원문은 밑줄이 아니라 방점, 인용자)⁵⁷⁾

이 조치는 실시에 옮겨졌다. 동 6월 후생성 건민국은 근로보국대·근로봉사대와 더불어 ‘중요산업 방면에 전환하는 자’를 위한 훈련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결정했고, 일정액이 배당된 홋카이도에도 보조 신청의 지시가 내려졌다.⁵⁸⁾

이렇게 강화된 이구조선인 노동력동원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노력의 제공 중 근로보국대의 편성에 대해 말하자면, 오사가 같은 곳은 상시편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 보국대의 취입에 임해서는 먼저 3일 간 숙박 훈련을 하게 하여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보낸 곳에도 가서 협화회 본부원 등이 이들을 위문 격려하고 있는데, 성적은 우수하다. 교토의 오에야마(大江山)광산 같은 곳은 특히 그 현저한 예이다. 또 규슈 오무타(大牟田)의 미쓰이미이케(三井三池)광산 같은 곳도 보국대원 중 1/5 가량은 잔류하여 결국 남아 있는 모양이다.⁵⁹⁾

앞에서 확인했듯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초기 단계에서 이구조선인 최대의 집주지 오사카의 근로보국대 동원은 지극히 부진했으나, 1944년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상시 편성’이 가능할 정도까지 강화되었던 것이다.

57) 厚生省建民局, 1944.3 <協和會事務打合會への厚生省指示事項> 《박경식》 5, 714

58) 1944.6.16 <内地在住朝鮮人の勤勞報國隊、勤勞奉仕隊員等の訓練費國庫補助に關する件> 《協和會關係資料集Ⅲ》

59) 思想對策係, 1944.8 <半島人問題> [水野直樹 편, 1998 《戰時期植民地統治資料》7 (柏書房) 319~323] “현재 조선에 징병을 폐기로 했기 때문에 장래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상 반도인을 신용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심이었을 것이다.

2. 징용

근로보국대를 통한 동원이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징용은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성의 정도가 훨씬 높은 징용도 그다지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이하 그 내용을 살펴보자.

1942년 9월 21일의 첫 징용은 해군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이주조선인으로 정해졌다. 첫 징용령은 해군 진수부의 직할 사업장에 필요한 토목건축 관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⁶⁰⁾ 일본어에 정통하고, 사상과 성행이 양호하며, 30세 미만의 독신 생활자를 기준으로 5,203명을 징용하여 군속으로 채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조선인의 첫 징용은 성과가 매우 낮았다. 홋카이도를 포함한 8개 도현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총 17,188명에게 출두 명령이 내려져서, 9,818명이 출두했고(7,372명 불출두), 4,293명이 징용령서를 수령했다. “조선인의 징용은 내지인과 달리 국민직업지도소장만으로는 완전한 운영을 기하지 못한”다는 당초의 판단은 적중했던 것이다.

그 이유로서 경찰 당국은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징용 후 가족의 생계 곤란, 임금의 지급, 징용 기간, 징용 후의 업태와 장소 등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기피자가 속출했던 것이다. 또한 문제의 근원이 “제주 조선인 청장년의 시국 인식이 아직 지극히 낮다”는 데 찾아지면서 향후의 징병제 실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경찰 당국의 분석과는 다른 각도에서 징용제의 운용과 결과를 살펴보자. <표 3>과 같이 출두 명령을 발한 인원의 40% 이상이 불참한 것은 ‘송달 불능’, 즉 소재 파악의 불가능이라는 제도적 결함이 주된 요인이었다.⁶¹⁾

이주조선인의 호구 조사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소임이었으나, “호구 조사는 인적 경찰력의 부족으로 인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이지만, <표 3>은 재일조선인 통제의 주역이던 협화회(사실상 경찰)의 조사 명부에 의해 내려진 출두 명령의 결과였다. 해군의 요구로 협화회가 경찰의 협력을 얻어 총력을 기울여 조사했는데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0)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內務省警保局, 1942 <社會運動の狀況> 《위 책》 900~904을 참조했다.

61)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40~42

〈표 3〉 이주조선인 징용의 출결 상황

부현	출두요구	불참	출두	징용	불참 사유
후쿠시마	95	22	73	20	송달 불능
도쿄	4,599	2,345	2,254	630	제출491, 송달 불능1,435, 무반응419
오이타	224	30	194	43	송달 불능
오사카	1,037	117	920	619	송달 불능, 징용자619명 중 불참15명
사가	209	69	140	70	송달 불능
에히메	397	158	239	106	송달 불능29, 병2, 부재자4, 기타34
사이타마	204	47	157	50	송달 불능46, 병1
계	6,765	2,788	3,977	1,538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總和社) 41

* 《박경식》 4권, 901~903과는 일부 숫자가 다르다.

이상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징용제의 운용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자. 먼저 경찰 당국의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펼치기로 한다.⁶²⁾

1942년 10월 최초로 발동된 징용령은 출두율이 51%였으나, 이후 점점 높아져 1944년에 들어와서는 61% 정도에 달했다. 하지만 이주조선인이 주로 토건과 같은 자유노동에 종사하여 상당히 고액의 수입을 얻었으나 징용으로 인해 수입이 격감하게 되고, 또 징용 범위가 확대되어 독신자보다도 오히려 30세 이상의 가족체재자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징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노동의욕도 저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고야의 조선인 징용자의 경우, 1944년 2월 중순부터 말까지 무단 장기 결근자는 36%에 이르렀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조선인의 동태 파악이 어려운 탓에 징용의 중심이 종래 해당 구역에 정주하며 생업을 영위하는 “비교적 성실한 사람에게 편중되고, 반식국적 업체에 종사하는不正업자는 그 이동성 때문에 거의 징용에서 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만큼 이주조선인에 대한 동원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측면은 당시 관계자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도쿄에서의 징용 상황은 전쟁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도 출신자는 내지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징용 기피적 경향이 강하여 이를 불출두자에 대해 보면 내지인 1할 9푼에 비해 반도인 4할 5푼이다. 이들 불출두자 중에는 주소 부정자가 많다는 데 의한 것도 상당히 있다. 또 應徴 후의 수입 감소를 꺼려해 부정(暗)임금 또는 암거래에 의한

62)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內務省警保局, 1944.6.10 <思想旬報>第7号 《박경식》 5, 31을 참조했다.

이익을 좇아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다.⁶³⁾

위 '주소 부정자'의 사례는 증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金相均의 경우 결혼한 누나 집에서 1943년 징용 통지를 받았으나,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되어 정처도 없이 지바에 와”서 히타치(日立)항공기공장의 매립공사장에서 일을 했다.⁶⁴⁾ 이주조선인에게 “전시체제 하에서는 극도의 일손 부족, 징용만 잘 피하면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기억될 정도였던 것이다.⁶⁵⁾

3. 징병

이상과 같이 이주조선인의 노동력동원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주조선인은 노동력동원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하지만 징병 기피가 허용될 수 없었던 시대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징병제의 도입으로 이주조선인 통제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하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942년 5월 도입이 결정된 징병제는 '병역법'의 개정을 거친 다음 1943년 8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성과 내무성도 각 지방에 지시를 내려 조선인에 대한 '지도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⁶⁶⁾

1943년에 들어와서 협화회는 징병 준비에 최대한의 역량을 경주했다. 동 4월의 지방 장관 회의에서 후생차관은 “징병제 시행의 준비 및 노무자 지도훈련의 강화 철저와 더불어 지방협화회 하부조직의 정비 확충에 각별히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하는 훈시를 했다.⁶⁷⁾ 1943년 8월 정부가 작성한 문서 '시국하의 내지재주조선인문제'에 의하면 “1943

63) 勞働運動史料委員會 編, 1965 《日本勞働運動史料》 9, 464

64)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200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關東編1－》 (柏書房) 281~283

65) 韓哲曦, 1997 《人生は七轉八起-私の在日70年-》 (岩波書店) 57

66) 1942.6.30 <朝鮮人ニ徴兵制施行ニ伴フ内地居住者指導ニ關スル件> 《協和會關係資料集Ⅲ》 25~26

67) 《厚生次官在勤記録》 二, 本省一般關係,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 227~228에서 재인용.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1943년 5월 11일자 통첩을 보면, '내지 재주조선인 장정의 연성'에서 '이입노무자'는 제외되어 별도로 '이입노무자 훈련 및 취업요강'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1943.5.11 <内地在住朝鮮人壯丁鍊成ニ關スル件> 《박경식》 5, 750~751). 연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1. 청년학교, 중등학교 이상에 재학하는 자 및 그 졸업자, 청년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자 및 그 수료자 2. 육해군 군속 3. 이입노무자로서 '이입노무자훈련 및 취업요강'에 의해 소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자 등의 세 부류였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근로보국대 등으로 타 지역에서 온 자와 심신 장애자 등도 연성에서 제외되었다(<北海道協和會壯丁鍊成會>

년도의 징병제 실시에 즈음하여 장정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가정부인의 지도를 개시 하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연관된 움직임은 지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홋카이도 협화회는 8월 한 달 동안 1944년도 징병 적령자(1923.12.2~1924.12.1 출생자)와 1945년도 징병 적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장정 연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실행에 옮겨졌다.⁶⁸⁾ 효고현 협화회의 ‘효고현 협화회 청년부 지도요령’에서는 조선인 남자 15~21세를 正부원, 22~25세를 특별부원으로 하는 협화회 청년부를 지회의 관할구역 별로 설치할 계획이었다.⁶⁹⁾ 후쿠시마(福島)현의 경우 1943년 현의 협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상 현 병사후생과, 특고과 및 노정과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그 적정 원할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⁷⁰⁾ 1944년 7월 협화사업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18~21세의 청년은 “제국 군인으로서의 정신훈련에 주력을 쏟아야 한다. 이것은 가정, 사회의 정황 및 본인의 소질 등으로 미루어 금후 수년의 잠정 기간 중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⁷¹⁾

징병제의 도입에 즈음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거주지 파악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조선인은 높은 이동성과 ‘주거 부정’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기류조사’였다.

참고로 기류조사는 전적으로 이주조선인에게만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효고현 아이오이(相生)시의 경우, 각종 자료를 보면 지성료(至誠寮)에 조선인 징용공 1,710명이 수용되었다고 하지만, 지성료가 있던 사카타(佐方)에는 2세대 6명밖에 기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류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⁷²⁾

이주조선인의 기류조사에 관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1942년 12월이었으며, ‘내지재주 조선인의 호적 및 기류 정비요강’(이하 ‘정비요강’)이 그것이다.⁷³⁾ 조선에서는 20세 이하

《協和會關係資料集Ⅲ》 51).

68) 같은 자료, 50~51

69) 1943.6 《兵庫縣社會事業》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 224에서 재인용.

70) 兵事厚生課, 1943.5 <協和事業ノ狀況(內政部長議會說明資料)>[長澤秀禎·해설, 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 1 (綠陰書房) 59]

71) 長島慶三, 1944.7 <協和事業ノ根本的改革私案> 《戰時期殖民地統治資料》 7, 267~268. 노동력 동원에 관한 방침이 비중이 낮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72)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編,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兵庫編-》 (柏書房) 234~237. 아이치현 호이(宝飯)의 고사카이(小坂井)에서 발견된 기류부에 기재된 조선인들도 이주조선인으로 비정된 대(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編, 1997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25).

73) 司法省, 1944.10 <内地及樺太在住朝鮮人の戸籍及寄留整備提要> 《協和會關係資料集 V》

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⁷⁴⁾ 일본(사할린 포함) 내에서는 모든 남자가 대상이 되었다. '정비요강'에 따라 1943년 2월 20일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3월 1일 이주조선인의 호적과 기류계의 일제 정비가 행해졌다.⁷⁵⁾ 그 결과 조사대상자(사할린 포함) 949,729명 중에서 기류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절반인 470,975명에 이르렀다. "징병제 실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시되었다는 한계 때문인지는 불명확하지만,⁷⁶⁾ 이주조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이 새삼 부각된 형국이었다.

1944년도 징병검사 결과를 참작하여 12월 2일에는 제2차 기류조사가 각의에서 결정되었고,⁷⁷⁾ 이듬해 2월 10일에 실시되었다. 1차에서는 남자에 한해서만 호적과 기류 정비조사를 실시하여 1944년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나, 불충분한 바가 많아 1945년 이후 징병적령자를 파악하기 위해 '급거' 결정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남녀 전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⁷⁸⁾ 실시요령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동포의 기류를 정비하는 동시에 그 주거의 이동을 상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⁷⁹⁾

폐전이 임박함에 따라 협화사업의 역량은 한층 징병제 쪽으로 기울어간 것으로 보인다. 1943년도 1944년도에 걸쳐 협화사업 예산 중 예비비의 경우, 강제동원조선인의 '指導誘掖'과 더불어 징병제 실시에 관한 지도훈련 철저를 위해 예산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⁸⁰⁾ 1944년 3월 후생성 건민국이 협화회 실무자에게 지시한 항목에서도 기존의 사업 외에 '장정 훈련의 철저에 관한 건'이 '이입노무자의 훈련에 관한 건'이나 '신문(가칭 협화신문, 인용자) 발행에 관한 건'과 같이 들어 있으며,⁸¹⁾ 1945년 1월의 경우 '홍생협화'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징병준비교육'과 '노무자지도'가 열거되어 있다.⁸²⁾

187~193

74) 조선에서의 기류조사에 관한 사항은 《戰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46~47을 참조.

75) 《박경식》 5, 175~179

76) 《協和會關係資料集V》 187

77) <内地在住朝鮮同胞ノ第二次一齊調査實施ニ關スル件ヲ定ム> 《協和會關係資料集V》 203~208

78) <司法部內臨時職員設置制中ヲ改正ス>(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1945년 1월 16일 이를 위해 사법성 속 2명, 재판소 서기 19명의 증원이 이루어졌다.

79) <内地在住朝鮮同胞ノ第二次一齊調査實施要綱> 《協和會關係資料集V》 207

80) 1945.2.1 <東京都官制外五勅令中ヲ改正ス>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또한 '兵事 사상'의 보급 철저를 위해 강연, 영화 상영, 부인 1일 입영 등의 시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81) 1944.3 <指示事項> 《協和會關係資料集I》 441~448

82) 1945.1 <決戰下の協和事業> 《興生事業研究》 ; 《朝鮮問題資料叢書4》 541

Ⅵ. 이주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의 괴리

1. 이주조선인 생활의 독자성

이주조선인의 취업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1920년대 중반 고베시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으로 도향한 조선인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직업소개소도 아니고 시립 숙박소도 아니다. 미리 의논한 것처럼 일제히 조선인을 상대하는 노동합숙소에 홀러들어간다”고 되어 있다.⁸³⁾ 노동합숙소란 다름 아닌 조선인부락이었다.

이런 정황은 중일전쟁 직전까지 이어지는데, 효고현의 사례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⁸⁴⁾ 먼저 취업 경로는 거의 조선인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 즉 연고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 4>가 그러하다.

<표 4> 효고현의 이주조선인의 취업 경로

	실수	비율
공설소개소 소개	12	0.1
방면위원 소개	1	0.0
중개인(口入屋)	1	0.0
신문광고	13	0.2
지인 소개	3,857	47.1
자기 지원	2,683	32.8
친척 소개	684	8.4
기타	935	11.4
계	8,186	100

*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狀態> 《朝鮮問題資料叢書3》

당시 사회정책시설인 직업소개소와 방면위원은 물론이고 중개인이나 신문광고의 이용도 거의 없다는 데서 이주조선인 공동체의 고립성과 독자성이 분명하게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주조선인의 높은 이동성과 연동한다. 일본 본토 거주 기간, 효고 현에

83) 神戸市社會課, 1927 《在神半島民族の現状》; 《協和會》 152에서 재인용.

84) 이하의 기술은 兵庫縣社會課, <朝鮮人の生活狀態> 《朝鮮問題資料叢書3》를 참조했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1937년 2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2개월이었다.

거주 기간, 현주지 거주 기간 등을 정리한 아래의 <표 5>가 그러하다.

<표 5> 효고현의 이주조선인의 거주 기간

	일본 거주 기간		효고현 거주 기간		현주지 거주 기간	
~1개월	28	0.3	366	4.5	720	8.8
~6개월	123	1.5	1,212	14.8	2,041	24.9
~1년	221	2.7	856	10.5	1,189	14.5
~2년	441	5.4	1,046	12.8	1,104	13.5
~3년	769	9.4	913	11.2	822	10.0
~5년	1,988	24.3	1,447	17.7	1,102	13.5
~10년	2,666	32.6	1,592	19.4	893	10.9
~15년	1399	17.1	596	7.3	259	3.2
15년~	502	6.1	152	1.9	51	0.6
불명	49	0.6	6	0.1	5	0.1
계	8,186	100	8,186	100.2	8,186	100

* 효고현 거주 기간의 비율 합계는 반올림한 것을 더한 결과이다.

* <표 4>와 같음.

일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지만, 3년 이상 효고 현 거주한 비율은 50%를 밑돌며, 3년 이상 현주지에 거주한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현주지에서 1년 미만 거주자의 비율은 50%를 넘는다는 사실에서 이주조선인의 높은 이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이동성은 히로시마현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도고치초(戸河内町) 소재 우쓰나시(打梨) 발전소 공사로 인해 이주한 우쓰나시 심상소학교의 조선인 가족이 그러하다.⁸⁵⁾ 1937년에 51가족, 1938년에 21가족 등 총 72가족이 전입했는데, 조선인 보호자의 이전 주소는 조선 32가족, 일본 내 40가족(히로시마 내 18가족) 등이었다. 위 32가족(44.4%)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현의 내륙부로 이주했는데, 이는 이미 히로시마현에 이주해 있던 사람들과의 연고나 네트워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히로시마 내의 이주자 18가족(25.0%)의 이전 주소는 대부분 도고치초 인근으로 수력발전소 공사가 이루어졌던 곳이어서 수력발전소 공사를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85) 廣瀬貞三, <太田川水系發電所工事と朝鮮人労働者>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http://www.nuis.ac.jp/ic/library/kiyou/9_hirose.pdf에서 인용.

전출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낸다. 내역은 조선 귀국 33가족, 도고치초 6가족을 포함하여 히로시마 내 18가족, 일본 내의 다른 현 9가족, 행방불명 4가족, 공란 8가족 등이다. 요컨대 전체 72가족 중 겨우 6가족(8.3%)만 도고치초에 계속 거주한 셈이 된다.

경찰 당국의 자료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 후쿠오카 지역의 경우 현의 특고과장은 “본 현(후쿠오카, 인용자)보다 홋카이도 쪽이 하루 5전 높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족을 데리고 홋카이도까지도 걸어간다”고 하면서, 조선인의 높은 이동성이 협화운동의 추진에도 장애가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⁸⁶⁾ 그리고 1941년 2월 27일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의 통첩에서 “소위 연고에 의해 내지에 도항하여 평화산업, 자유노동 등에 취로하는 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등의 실정”이라고 파악되었다.⁸⁷⁾ 여기서의 ‘연고’는 위에서 관찰한 이주조선인의 독자적인 네트워크(취업이나 생활을 포함)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에서 빈발했던 도망자의 경우, 도망의 결행과 일본 정착 과정에서 이주조선인의 네트워크가 활용되기도 했다. 가령 1944년 가을 사가미(相模)호담 공사의 강제동원자 2명의 경우, 각각 도쿄의 가족(자형)과 오사카의 친척을 의지하여 도주를 실행했으며, 지바현의 모하라(茂原) 해군비행대의 경우 이주조선인 노동자 중에는 강제동원으로 도입한 후에 탈출해서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며, 安壽烈의 경우 강제동원지인 홋카이도의 비행장 공사장에서 도망쳐서 오사카를 거쳐 군마 구사쓰(草津)의 일본광산 광산에서 일을 했다.⁸⁸⁾ 이바라키의 히타치광산에서 도망친 강제동원자는 히로시마에서 협화회 보도원을 하던 사촌을 찾아갔고, 그는 협화회 회원증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댓가로 미쓰이미이케광산에 정신대원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중노동을 했다.⁸⁹⁾

이런 높은 이동성은 전쟁 말기까지 지속되었는데, 효고현의 아이오이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⁹⁰⁾ 1942년부터 1945년까지 214가구가 기류계를 제출했는데, 그 중 조선에서 건너온 가구가 142가구, 일본 각 지역에서 옮겨온 가구가 72가구이다. 일본 내의 이전 거주지로는 오사카와 효고가 각각 26가구와 21가주로 대부분이며, 이어 히로시마 6가구,

86) 司法省調査部, 1939 <福岡縣下在住朝鮮人の動向に就て>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Ⅱ 朝鮮人1 上卷》 409

87) <朝鮮人勞務者移住促進ニ關スル緊急措置ノ件> 《박경식》 4, 14

88)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200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關東編1-》 (柏書房) 257~259·277·296~298

89) 山田昭次, <日立鉾山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解説と証言->(梁泰昊 편, 1993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461)

90)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兵庫編-》 (柏書房) 234~237

아마구치 4가구, 교토 3가구, 기타 12가구의 순이다. 아이오이시 소재 하리마(播磨)조선소에서 관련 공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것이라 추측된다.⁹¹⁾

2.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의 차이

이상에서 협화회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당국자에게서도 이주조선인 대책의 주안점은 노동력동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조선인 노동력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어는 물론 일본 본토에서의 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이주조선인은 왜 노동력동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선인 동원의 또 다른 심층이 드러난다.

먼저 홋카이도 소재 탄광의 사례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⁹²⁾ 앞서 등장한 바 있는 유바리탄광의 경우, 중일전쟁 이전부터 재직하던 이주조선인이 약 60명 정도 있었다. 이들을 강제동원조선인의 관리에 투입할 것인가에 관해 노무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 다음, “내지제주 조선인은 주지하듯이 내지 사정에 정통하여 가동 중인 이입 조선인에게 이런 저런 선전을 하기 위해 악영향을 미쳐 지도와 관리 차원에서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기에 이후 전형에서는 채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청을 본사에 보낸 바 있다. 즉 탄광에서 추진하는 ‘황민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주조선인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물론 강제동원조선인과 이주조선인과의 관계는 지역적으로 혹은 분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비슷한 인식과 정황은 조선에서의 강제동원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에서의 노동자 모집에 관여했던 미쓰비시 계열의 유베쓰(雄別)탄광 모시리(茂尻)광업소 직원은 다음과 같은 회상을 남긴 바 있다.

1939년 무렵의 조건은 총독부에 가서 각 도, 이른바 어떤 현을 할당받아 거기서부터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다. 그 조건 중에는 일본어를 아는 자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 일본어를

91) 아이치현의 한 지역의 경우에도 기류부에 등재된 266세대 중 약 90%가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옮겨왔으며, 이전 거주지는 오사카, 기후, 도쿄, 아이치현 내를 비롯하여 15개 도부현에 걸쳐 있었다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編, 1997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部・東海編－》(柏書房) 25

92) 이하의 기술은 戸塚悦郎, <日本帝國主義の崩壊と<移入朝鮮人>勞働者>[隅谷三喜男 편, 1977 《日本勞使關係史論》(東京大學出版會) 244~245·256~257]을 참조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으니 유바리에 있었다, 조반(常磐)에 있었다, 오사카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말을 알고 있다는 것은 폐해를 낳게 됩니다. 일단 내지에 다녀온 사람은 좋은 것보다 쓸데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낫다고 정하게 되었다. …⁹³⁾

‘쓸데없는 것’의 내실은 히타치광산의 내부자료(‘昭和16年度 所長會議資料’)의 조선인 관리방침에서 잘 드러난다.

내지 先行 반도인과의 직접 접촉을 절대 회피하는 것은 관리 대책상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이다. 내지 선행 반도인이 새 도래자를 이용하기 위해 감언이설로 유혹하거나 고의로 內鮮대립의 민족적 사상과 편견을 주입하고 선동하는 등 신규 도항자 상호간에 직접교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⁹⁴⁾

지쿠호 지구 탄광의 노무계장도 비슷한 얘기를 남기고 있다.

기주⁹⁵⁾반도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흔히 협화회 관계의 근로보국대 중에는 이입반도인을 誘引하는 자가 있으며, 이 기주반도인에 대해 그다지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내지에 있어 이입 초기의 반도 노무자보다는 훨씬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악랄한 자에게 걸리면 그 피해는 크다.⁹⁶⁾

‘감언이설’과 ‘유인’의 결과는 가와사키 소재 일본강관 노무차장의 분석에서 분명해진 다. 일본강관의 경우 처음에는 회사 내에 훈련공의 기숙사를 두었는데, 인원의 증가에 따라 밖으로 분산 수용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졌고, 특히 당가와사키시에는 반도 자유노무자가 많기 때문에 통근 도중이나 휴일에 그들과 길에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인부나 다른 일 쪽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다”고 한다.⁹⁷⁾

그 결과 작업 현장에서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은 서로 ‘격리’되기도 했다는 것이 많은 증언에서 확인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지바현의 모하라 해군항공대의 시설부에서

93) 北海道立労働科学研究所, 1999 《石炭鉱業の鉱員充足事情の変遷》;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北海道保健福祉部保護課) 47에서 재인용.

94) <日立鉱山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解説と証言-> 380

95) 원문에는 歸住로 되어 있으나, 이는 既住의 오키로 판단된다.

96) 1943 <半島勞務者心理の私見> 《筑豊石炭鉱業互助會報》;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Ⅱ 朝鮮人1 上卷》 1054

97) 國民勤勞研究會, 1943.3 《半島機能工の育成》; 《朝鮮問題資料叢書1》 104~105

는 이주조선인의 경우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같이 ‘조’가 직접 모집했고 비행장 밖의 ‘함바’에 거주했는데 비해, 강제동원자들은 비행장 안의 가설주택에 수용되어 감시를 받았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다.⁹⁸⁾ 앞서 언급했던 김상균의 증언 중에는 니가타(新潟) 니쓰(新津)에 있던 강제동원자에 대해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 우리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⁹⁹⁾

이상과 같이 개별 기업들은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에 대해 상반된 인식과 대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정황은 강제동원조선인이 이주조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가령 탄광의 경우, 1943년 4월 현재 採炭夫의 비율은 강제동원조선인(51.6%)－이주조선인(32.9%)－일본인 근로보국대 등(21.9%)－일본인 정규(18.4%) 등의 순으로서, 강제동원조선인은 “지하노동의 특히 가혹한 직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한다.¹⁰⁰⁾ 요컨대 이주조선인이 동원해야 할 노동력으로 상정되지 않은 데에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의 분리는 식민지배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작동되었던 기업 내지 자본의 관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VII. 나오며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많은 조선인들이 현해탄을 건너 일본 본토로 삶의 터전을 옮겨갔다. 이들은 일본 사회 저변의 하층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지탱하면서 독자적인 생활을 이어갔고, 그런 조선인의 파악과 통제는 전적으로 경찰 당국에 맡겨져 있었다.

노동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주조선인은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노동력 부족이 외

98)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關東編 1－》 274~275. 역시 1920년대 중반에 도입한 李瑛奭의 경우 1942년부터 야마구치구미 소속으로 일했으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과는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위 책》 273).

99) 《위 책》 283

지역에 따라서는 이주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이 같이 거주한 경우도 있었다(山田昭次, <山形縣最上郡大藏村古河永松鉱業所, 朝鮮人強制連行聞書>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 380).

100)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 263~264

처지던 탄광 등의 산업에는 한반도에서 직접 동원된 조선인들이 배치되었고, 이주조선인과 새로이 일본 본토에 거주하게 된 강제동원조선인의 통제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협화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그런 와중에서도 연고도항에 의해 도입하는 이주조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들은 주로 비군수산업 쪽에 자리를 잡았다.

동원 대상으로서의 이주조선인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미국과의 개전을 전후한 시기이며, 이는 이른바 ‘모집’에서 ‘관 알선’으로의 이행과도 연결된다. 징용 대상으로 편입되거나 근로보국대와 같이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임시 노동력으로 활용되면서 이주조선인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계상되고 동원되어 갔던 것이다.

이런 이주조선인의 동원은 그다지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근로보국대는 물론이고 징용에서조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주조선인의 파악과 통제 시스템이 보강되었고, 징병제의 도입과 실시 준비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류조사 등을 통해 포착된 이주조선인은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징병제 혹은 근로보국대 형식으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동원되어 갔다. 하지만 계획과 성과의 측면에서 이주조선인의 동원은 강제동원조선인에 비해 명확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주조선인 동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하층 사회 특유의 폐쇄성과 높은 이동성, 취업과 관련한 독자적인 네트워크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이주조선인 공동체의 고립성과 독자성은 강제동원조선인의 ‘도망’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주조선인은 필요한 노동력으로 파악되기도 동원되기도 어려운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던 셈이며, 바로 그 점에 착안함으로써 우리는 이주조선인이 강제동원조선인과 분리 혹은 격리되어야 했던 원인을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이윤 극대화, 그런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전시동원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견해가 있다. 이주조선인 동원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기주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국’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노동력 동원보다도 치안 유지의 관점에서의 정신적 동원이나 ‘동화’ 정책의 추진에 상대적인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니시나리타의 평가가 그것이다.¹⁰¹⁾ 일본정부가 노동력 동원이 아니라 치안 유지

101) 《위 책》 229. 협화회 연구의 선구자인 히구치 유이치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즉 그는 중앙협화회의 설립 이유는 ‘실업대책상 문제’가 아니라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전쟁정책 수행상 바람직

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의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이주조선인 동원이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 '부산물'로서의 결과였다. 즉 치안의 측면에서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조선인의 동원은 병력동원을 제외하면 패전에 이르기까지도 근로보국대와 근로봉사대의 공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⁰²⁾

하지 못한 요인을 지닌 80만 명의 집단”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협화회의 과제 중 하나는 ‘치안대책’에 부응하는 것이라 지적했다(《協和會》 81~82).

102) 1945.1.13 <移入朝鮮人勞務者の事故防止協議會に關する件> 《協和會關係資料集Ⅲ》 104~105
警保局長의 통첩으로 징용자 증가에 따른 치안대책 강화를 지시하고 있으며, 이런 치안적 관점은 패전이 임박한 시점까지 중시되었다.

[비평문]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본 논문은 전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이동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연고 등을 통해 일본에 생활공간을 찾았던 ‘이주조선인’이며 또 하나는 전시기에 들어서 거주하게 된 ‘강제동원조선인’이다. 종래 연구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논하지 않았고,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함의를 조선인 전체로 일반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야기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런 연구 상의 공백을 메운 본 논문은 의의가 크다. 일본 도항 패턴의 차이는 그들의 생활 패턴의 차이를 낳았다. 그리고 차이가 생긴 것은 서로 다른 패턴으로 도항한 조선인의 존재 형태 자체에 의한 것이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신선하며, 평자로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다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그들의 도항 동기에 대한 고찰이다. 도항의 동기는 도항지에서의 생활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도항의 목적이 현금 수입 획득으로 장기 거주가 아닌 경우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꾸로 장기 거주가 목적인 경우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해진다. 조선인의 일본 도항에는 일반적으로 식민지 권력의 개입 등 외재적 요인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고찰할 때 필요한 동기의 분석이 뒤로 미뤄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논문과 같이 현지에서의 생활을 시야에 넣은 연구를 진행할 경우, 동기에 관한 고찰 없이 분석하면 결론이 불충분한 추론에 그치고 만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도항조선인과 강제동원조선인의 생활의 차이는 이 점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로 도항조선인 내부의 관계이다. 본 논문은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행동을 일본 정부, 특히 경찰과의 관계에서 묘사하고 있다. 확실히 조선인의 행동은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으며 協和會를 통해 지도를 받는 관계여서 양자를 대치시키는 시점은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도항조선인이 경찰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가는 일률적이지 않았다. 소수파이지만 경찰에 협력적인 조선인이 있었던 반면 사회주의 운동에 속하는 과격한 그룹도 있어서 이들 간에는 경찰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

이 도항조선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가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

셋째로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도항조선인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지니는 치안유지적 측면은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 도항조선인 가운데 일부분이 과격한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경찰이 이런 각도에서 그들의 행동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본 논문이 말하고 있듯이 도항조선인이 지닌 정보가 강제동원조선인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들을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으로 내몰기에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면 노동 임금은 상승하는 것이므로 정보의 차단은 노동 공급이 부족한 전시기 일본의 고용자 측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사회주의를 비롯하여 당시의 정부로서는 적절치 못한 사상이 강제동원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도 경찰에게는 마찬가지로 중요하였을 터이다. 전시기를 통하여 도항조선인과 일본인의 混住가 진전되었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이 점은 보다 중시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